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우)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35 기사연빌딩 502호 / 전화 (02)3147-1505 (02)312-7245 / 전송 (02)364-4242
전자우편 uvep@chollian.net 홈페이지 www.han-sori.org

2003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심포지움

MCI.49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심포지움**



다비타의집 / 두레방 / 막달레나의집 / 벗들의 집 / 새날을여는청소
녀쉼터 / 쏘냐의집 / 여성문화인권센터 / 여성이야기공동체 / 오데레
사수녀 / 은성원 / 정다운집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준회원 - 햇살센터 / (사)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 속초성폭력상담소

일시 : 2003. 7. 8.(화) 오후 2~5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후원 : 서울특별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심포지움

· 인사밀씀 (한소리회 대표)

· 격려밀씀 (이봉화 서울시 복지여성국장)

· 성매매 피해여성 비디오 상영

· 주제발표

---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변화순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현황과 제안

유영님 두레방 원장

---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

신면호 서울시여성정책과장

--- 성공적인 재활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전우섭 다비타의 집 대표

· 종합토론

Contents

Page	내 용
3	주제1. 틸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25	주제2.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틸성매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현황과 제안
33	주제3.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틸성매매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
45	주제4. 성공적인 재활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7	참고자료1. 선도보호 시설의 현황과 과제(은성원 사무국장 최정은)
71	참고자료2.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75	참고자료3. 성매매 여성의 피해 사이버 상담 사례
76	참고자료4.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 1·2
77	참고자료5. 언론에 보도된 사례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황정임(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금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검·경찰의 사법적 개입은 물론 복지적 개입 역시 미온적이었다. 특히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적 개입은 이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함과 동시에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미흡했었다.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가 있다. 상담서비스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여성복지상담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시군구청에 배치됨으로써 실제 상담업무 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2001년 11월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별정직이었던 여성복지상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부녀보도시설이란 명칭으로, 소위 윤락여성과 윤락우려여성에 대한 직업보도시설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경기여자기술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직업보도에서 인성변화를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시설명도 선도보호시설로 개칭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장기보호시설 이외에 선도일시보호시설도 설치되었다. 중장기시설이 인성변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설 입소절차와 보호시설내 프로그램 내용 등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전환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이나 인력 등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실제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거주자가 10대 가출청소년에 편중되면서 10대에서 40,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는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문제를 갖게 되고 거의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시피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 및 이들의 사회적 지원을 위

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체적이며 전문적인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상담서비스는 현장성 있고 접근성 있는 상담을 실시해 탈성매매를 유도해야 하며, 시설보호서비스는 중장기와 일시보호시설의 특성에 맞는 심리·정서적 개입 및 의료서비스, 취업 및 진학지도 등을 위한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와 선도일시 및 중장기보호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여성복지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일시 및 중장기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성매매 여성들의 상황 및 특성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가출청소녀, 성매매 경험을 한 가출청소녀에 대한 연구결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구분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가출청소녀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선도일시 및 중장기 보호시설의 주요보호대상이 10대 가출청소녀이고, 가출이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가출청소녀의 성매매로 유입과 유입 후 특성

우선 이들은 가출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로 유입된다(신미식, 2001).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리다고, 여자라고, 가출했다고 차별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 가출하여 갈곳이 없다는 것, 여성이라는 점이 높은 상품가치로 인정되는 곳이 소위 성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로 유입된 가출청소녀들은 우선 숙식이 해결되고 자신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고액의 돈을 벌게 된다는 생각에 잠시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고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다. 유입초기에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과소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서 성매매 구조에 빠져들게 된다.

둘째, 이들은 성매매로 인해 임신, 성병 등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매매 행위가 신체변화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황정임, 2001).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도 임신만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피임법은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정도이고, 임신, 피임 등에 대한 각종 성 관련 지식은 또래들 사이에서 떠도는 수준이다. 김성경(1997)에 의하면 10대 가출청소녀가 성매매 때 비방어적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임신과 성병에 노출되어 있으나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무너지면서 이들은 자포자기하고 허탈감

을 갖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신미식, 2001). 황순길외(2001)의 연구에서도 성매매 이후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죄책감' 27.5%,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20.0%,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다' 20.0%,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성매매 경험자의 경우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을 갖게 되고, 이러한 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포자기 상태에서 상습적인 성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넷째, 성매매로 유입된 가출청소녀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수차갑이나 두려움 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상대남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바인간적인 경험이나 폭력피해를 경험하게 된다(황정임, 2001). 황순길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이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응답자의 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면서 청소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잠시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려 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매매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쁜 기억이 있으면 이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려고 하고, 자신이 손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러한 감정과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들은 점점 성매매의 구조(고리)로 빠져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성매매의 구조(고리)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조야미외(2001)도 성매매 청소녀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가출이후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청소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매매 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녀들은 성매매 과정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싫었다, 상대남성의 협박으로 인해 무서웠다 등의 느낌을 토로했고, 의외로 보수적인 성의식을 보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녀보다 성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돈이 중요하고 성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나. 성매매 여성의 특성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첫째, 이들은 10대에서부터 40대이상까지 거의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은(1993)에 의하면 전 연령대 중 성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령 집단인 20~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매매 여성의 62.5%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며, 이는 전국 취업여성 가운데 서비스직 종사여성 중 동연령층 구성비(16.3%)의 무려 3.8배나 되었다. 변화순외(1998)의 연구에서도 20대에서 40~50대 여성들이 다양한 성매매 유형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대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박정은(1993)과 변화순외(1998)에 의하면 많은 경우 가출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력이나 직업적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 돈을 벌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 구조에 오래 있을수록 실제 돈을 벌지는 못한다. 성매매구조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 등의 차취, 수입의 불규칙성, 지출의 비계획성, 가족생계비 부담 및 질병 치료비 등으로 인한 지출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데, 박정은외(1993)에 의하면 빚문제는 이들을 성매매구조에 잔류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김강자(2002)도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고 성매매 비용의 일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업주들이 차복하고 있으며, 결근이나 지각 등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동료들간에 채무연대보증 방법으로 채무액을 확대하고 있고, 포주가 직접 성매매 비용을 수령, 관리하면서 채무액 및 부당한 관리비(방세 등)를 공제한 후 용돈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차취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성매매 시장에서의 잔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 여성들은 여러 건강 및 약물중독문제를 가지게 된다. 박정은외(1993)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 중 46.8%가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여 이로 인한 위장계통이나 기관지,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무리한 성행위 및 인공 임신중절수술로 여러 자궁질환이나 비뇨생식기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습관 중독성 약물이나 의약품 중 1가지 이상 사용경험이 있는 매춘여성은 전체 92.3%로 습관성 약물 및 의약품 오·남용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매매구조에는 한번 벌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감을 내재화하며, 잔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김강자(2002)에 의하면 여성들은 생리, 임신 등과 관계없이 성매매를 하고 상대남성으로부터도 폭력과 욕설 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으로 외부출입을 제한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탈출의지를 제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고리, 중간업자와 성매매 시장과 결부된 폭력집단(또는 개인), 손님들에게 받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은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탈성매매에 대한 의욕이나 다른 생활로의 전환능력에 대한 의지 자체를 갖기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다. 밤낮이 뒤틀린 생활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사회적 관계망과는 단절되고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 혹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과의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간매개자 즉 업주와의 사적관계는 이들로 하여금 차취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사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리를 스스로 끊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나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폭력, 임신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정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들을 하며, 결국은 빚의 고리에 빠지게 되어 성매매구조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정서적으로나 탈성매매를 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빚을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장 성매매구조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다시 성매매구조에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출청소년의 문제와 성매매 여성의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수 없다.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미 경험했다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구조에 유입된 경험의 경증과 잔류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성매매 여성과 구분짓고 이분화시키는 접근보다는 그 경험을 이끌어내고 성매매 구조로의 재유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매매구조에 대한 경험이 갖는 경증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원가족과의 문제, 연령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상황 등에 따라 개입의 여지와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출로부터 시작되는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 - 탈성매매 - 재유입 방지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복지상담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여성복지상담소의 문제점

1) 물리적 접근성 등 성매매 업무 수행여건 미흡

현재 윤락행위등방지법 15조¹⁾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들은 76.6%가 시군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공식적인 39개의 집결지역 중 독립된 여성복지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 독립된 상담소 형태가 아닌 시군구청으로 배치된 경우, 한국여성개발원(2001)의 연구에 의하면 시군구청에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은 행정업무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담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태조사결과 집결지 부근에 독립형 상담소가 없이 시군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상담 등의 실제적인 개입이 거의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15조에 의하면 시도, 시군구 및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수의 여성복지상담원들이 시군구청에 배치된 것은 이전에 부녀아동상담소 등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었던 상담소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 구조 조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독립된 형태의 상담소는 여성회관 등 관련기관에 설치된 상담실 형태가 많은데 대부분 상업 지역이나 주거지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집결지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회관 등 관련기관은 모든 지역사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종류의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도 안된다. 실제로 성매매 관련 상담건수가 월 3.3건, 전체 상담업무 중 성매매 비중이 5%정도였으며, 역전이나 터미널 부근에 설치된 상담소의 경우 성매매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집결지 설치형 상담소의 경우 전국적으로 39개의 집결지가 있는데, 집결지 근처에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청에 흡수되어 있거나 여성회관 등 관련기관 설치형, 역전/터미널 설치형 등 보다는 성매매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전체 업무 중에서 성매매 관련 업무 비중이 50%정도였다. 전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일반여성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상담건수는 많지만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접근성 미흡

성매매 여성들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성매매 유형이나 특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성병검진, 상담 등이 있는데, 여성들의 참여나 호응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여성복지상담원들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여성회관 등 관련기관 설치형이나 역전/터미널에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성병 검진, 상담이나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결지 설치형이나 시군구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상담의 경우 집결지에 설치된 독립형 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군구청에 있는 경우 성병검진할 때 동행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몇군데 있을 뿐, 대부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프로그램은 정서교육 혹은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혹은 분기별로 종교인이나 사회유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는 이벤트식 행사 형태로 정서교육을 하거나, 미용이나 피부관리 등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무료 기술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참가율이 낮으며 실제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을 전환한 여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성병검진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검진율이 높지 않았으며, 업주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성병검진을 권하고 있었고, 여성들도 성병검진 자체가 상대남성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면서 손님을 받지 않으면 성병검진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다.

3) 탈성매매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미흡

면접조사결과 상당수의 여성복지상담원이 탈성매매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탈성매매를 위한 새로운 개입이나 접근을 시도하는데 한계를 갖게 했을 수 있다.

- 여성복지상담원들 중에는 탈성매매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보며 한번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이 좀처럼 성매매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여성을 읊아매는 성매매 산업구조의 문제보다는 '쉽게 돈을 벌다보니 힘든 일이나 머리 쓰는 일은 하기 싫어 하는' 여성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런 견해를 가진 상담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강연, 기술교육 등을 시도해 보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개들이 직업 전환하겠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아요..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공장에는 못 간다고..이 일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돈 벌다가 공장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겠어요...말만 그렇지 나갈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그래두 어디 가서 뜻뜻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니까...사회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바깥에 나가면 못 살아요....이렇게 살던 애들은 여기서 얼마나 아가씨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줄 알아요....개들이야 몸이 상품이니까 진짜 잘해주죠...또 포주랑 오랫동안 같이 있다보면 정이 들어서 의리상 못 간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이 방법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걸 알지 못하니까 기술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요...워낙 머리 쓰는 걸 싫어하고....힘든 걸 싫어하니까...

- 일선에서 성매매 업무를 담당해온 상담원들은 상대적으로 집결지의 상황과 여성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성매매 문제를 여성의 탈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탈성매매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 대안적인 상담이나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보다는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을 수행해온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결지가 가지는 폐쇄성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성매매 여성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상담소가 집결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여건 못지 않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복지상담원들과 여성복지상담소는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여성복지상담원의 기능에 대한 8가지 업무나 시행령 제14조5가지의 여성복지상담소 기능에 제시된 내용에 비춰보면, 성매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명시된 내용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여성과 윤락우려여성을 요보호여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포괄함으로써,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차원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거의 전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복지상담소와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해 두었지만 일선에서 성매매 문제에 대한 개입은 유명무실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성매매는 그 유형이나 특성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가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무엇보다도 그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탈성매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들은 사회와 유리되어 있으며, 이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력화되어 있어서 업주들도 이런 여성들에 대해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자신할 정도인 상태이다. 조사결과에서 감금 등은 없다고 했지만 물리적 감금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여기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볼 때,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소의 새로운 시도들

그동안 몇몇 집결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여성단체들이 활동해 왔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외부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힘들었으며,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매매 문제는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아리 미성년자 단속과 군산화재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노력들이 보다 공식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준비 혹은 시도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설치 현황

■ 새움터 부설 평택여성복지상담소 ■

송탄에 위치한 평택 여성복지상담소는 여성단체(동두천 새움터)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상

담소로 2001년에 만들어졌다. 현재 3명의 새움터활동가가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성폭력상담소 기준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평택의 drop in center는 올해 초 송탄이 가진 지역적인 한계-기지촌-를 벗어나서 평택 3리 집결지를 담당하기 위해 상담소 부설 지소 형태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송탄 여성복지상담소, 평택의 drop in center는 활동가와 활동전망을 공유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 전북여연의 성매매인권지원센터 ■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는 전북여성단체연합(이하 전북여연)이다. 전북여연은 군산화재사건 이후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전북여연 사무실에서 성매매 여성상담전화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활동방향을 이어가면서 성매매 업무를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독립된 상담소 형태인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전주지역 내 집결지인 선미촌에 있는 시건물을 대여해 현장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2) 성매매 문제에 대한 개입 방식과 개입 내용

평택여성복지상담소는 동두천새움터 활동의 노하우를 살려 위기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 현장서비스를 포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기상담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이 있으면 여성을 데려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안전이 가능한 경우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빚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의료지원 서비스는 민간의사단체에 소속된 의사들이 한 달에 1번 정도 나와 여성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평택 drop in center는 송탄상담소의 현장지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2002년도 1월말에 개소했으며, 송탄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기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서비스는 주1회 정도 오후에 거리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콘돔, 생리대, 질연고, 가그린 등)을 나누어주면서 여성들의 얼굴을 익히고 상담소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담소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민간인인 상담원이 업주의 협조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태파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경찰과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업소를 점검하는 동안 업소에 들어가 여성들에게 상담소를 알리고 업소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와 미아리 현장상담 역시 평택 상담소처럼 위기상담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

3) 현장성²⁾

평택여성복지상담소(송탄)와 drop in center(평택3리)는 송탄과 평택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북여연의 성매매여성인권센터(전주 선미촌)와 한소리회의 현장상담(미아리)도 집결지 근처에 상담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여성복지상담소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소가 집결지와 거리상 가깝다는 것은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다. 즉 상담소의 존재가 여성들과 업주들에게 쉽게 인지되고, 관할 집결지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현장성은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택 drop in center의 경우 현장상담, 집결지 실태파악, 집결지 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해결과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탈출을 원하는 여성에 대한 위기개입등을 통해 현장성을 가지려 하고 있었다. 전북여연과 한소리회 역시 이러한 현장성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성을 상담소가 위치한 바로 그 현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었다. 즉 1차적인 현장성은 상담소가 위치한 바로 그 곳이 되겠지만, 현장 근처에 있는 상담소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 현장을 거쳐간 여성이 다른 곳에 가서 이곳에 pick up을 요청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을 현장으로 상정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여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의 경우 전주의 집결지에 설치할 예정이지만, 전주를 거점으로 해서 익산, 군산까지 포괄·연계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4) 상담인력

평택여성복지상담소의 경우 현장지소에서 근무하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현재 총 7명의 상담원이 상근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평택상담소를 포함한 세 기관 모두 현장 출신자(성매매구조에 있다가 탈출한 여성)를 상담원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장상담의 경우 여성들과 교감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출신자 보다 더 효과적인 상담원은 없다는 것이다. 탈성매매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을 갖고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상황 등을 파악하여 도움을 제공할 현장출신 상담원은 성매매 여성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일정수준의 자격을 요하고 있지만 현장출신자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훈련과 기존 상담원들과의 팀활동을 통해 현장에 경험과 지식을 익힌다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경험이 부족한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현장 투입시 활동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도망쳐 나온 여성을 상담하게 되면 상담원들처럼 라포형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동료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여기에서의 현장성은 성매매업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밀접성 혹은 근접성을 의미한다.

5) 향후 계획

평택여성복지상담소는 위기상담 및 개입과 법률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빠져나오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인데, 위기상담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한 이후에 제공되는 후속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실제 외부의 도움으로 성매매에서 빠져나왔다가도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있어서, 이런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성복지상담소의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여기도 있었다. 새로운 상담소 실무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모델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현재 현장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기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협장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시보호기능,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자활프로그램,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평택여성복지상담소의 경우 현장지소-평택여성복지상담소-동두천 새움터(평택상담소의 모체)를 연결하려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동두천 새움터는 기지촌 여성의 자활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drop in center가 집결지에서 위기상담과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와 여러 재활프로그램 등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개념의 평택여성복지상담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면서, 중장기 보호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동두천 새움터로 연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공동체까지도 구상하고 있었다.

여성복지상담원들은 성매매 전담, 현장상담소 설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집결지역 상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상담공무원으로서의 경험적 인식과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 자체가 한번 유입되는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새로운 시도들은 이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과는 다른 식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성매매 문제만을 전담하며, 현장에 상담소를 설치해 여성들과 자주 접촉,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설치된 성매매 업무만을 다루는 독립된 상담소 형태로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현장과의 물리적 접근성, 근접성을 가짐으로써 업소에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직접 접촉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집결지역에 설치된 탈성매매 지원 기관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까지 출동하는 기동성을 발휘, 현장성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이를 상담소는 위기상담, 법률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개입과 빛의 고리에서 여성을 끌어낼으로써 성매매 구조로부터의 단절을 시도한다.

셋째, 탈성매매 이후에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탈성매매 이후 재유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신체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성매매구조에서의 탈출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까지 총체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넷째, 현장출신자들을 상담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상담자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과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현장출신자들을 활용함으로써 탈성매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현장출신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배양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까지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도 성매매 여성들 대상으로 상담과 각종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고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자체에 대한 접근도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이 여성들이 그 구조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빚문제 해결이나, 심리적·정서적·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사회성 배양 및 실제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상담은 보다 탈성매매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그 여성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 개입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그 여성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형성, 이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대한 이해 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다. 여성복지상담소의 개선방안

여성복지상담소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역할은 성매매 문제에 주력하면서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구조에서 오래 머물수록 빚은 쌓여가고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화, 무력화되면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거나 실천에 옮기기 어렵게 되며,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심리정서적 문제 등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직업보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 시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면서 탈성매매를 위한 집중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1) 현장상담소 설치

우선 현장상담소를 확충해야 한다. 이는 우선 집결지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지만 점차 집결지뿐

아니라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집결지 독립형 상담소는 그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집결지역에 상담소가 없었던 경우는 현장형상담소를 새로이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때 현장상담소는 이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집결지 부근에 현장상담소만 설치하는 형이고(가형), 다른 하나는 본 상담소와 현장지소를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형이다(나형). 후자의 경우 집결지 혹은 집결지 부근에 현장지소를 설치해 현장성과 접근성을 담보하고, 본 상담소는 집결지와 인근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어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상담소는 개입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업주들에 대한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다.

구분			설명	
형태	단일형	현장지소형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소형태와 같은 현장성이 강한 상담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자체 프로그램 제공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함. 다른 관련기관에 연계하여 제공 	
		현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결지역에 설치된 상담소가 지소와 본 상담소 구분 없이 지소와 본 상담소 기능 동시 수행 	
운영주체	분리형	현장지소와 본 상담소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소와 본상담소로 기능 및 장소 분리 • 본상담소는 집결지역 인근에 위치하지 않음 • 현장 개입은 현장지소를 중심으로, 위기개입이후의 프로그램 제공은 본 상담소 중심으로 제공 • 지소 대신 차량을 이용한 이동상담 형태로 현장성 유지할 수도 있음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현장 활동경험을 중시해 선정 • 현재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정기간이상 성매매 관련 현장 상담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 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 최대한 활용 • ①현재 집결지역 인근에 독립된 상담소 그대로 운영. ②현장지소를 설치해 시군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전직된 여성복지상담원 배치, ③여성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가 현장지소 설치 	
설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 특정지역으로 불리우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부터 우선 설치 • 공식적인 집결지역으로 보고되지 않은 각지역별 군소규모 집결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도 설치 가능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왔던 독립된 상담소들을 적절한 형태로 현장성을 갖춘 상담소로 전환하는 것과 민간에서 새로이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집결지역 인근에 독립된 상담소를 그대로 운영하거나 시군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을 현장상담소 설치와 함께 재배치하거나 여성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가 현장지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성매매 활동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성매매 관련 현장 상담활동 경험자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할 수 있겠다.

설치지역은 우선은 소위 특정지역이라 불리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39개소 이외에도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군소규모의 성매매 집결지역, 유홍업소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2) 현장상담소의 현장 접근성 강화 : 현장상담, 현장실태조사,

예방 및 홍보/지역사회 연계자원 발굴, 위기개입

기존의 있는 상담소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담소들은 현장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상담소는 성매매 현장에 대한 개입을 기본전제로 한다. 따라서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다가감으로써, 여성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개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유도한다.

보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대략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현장상담 ② 현장 실태조사 ③ 예방 및 홍보, 지역사회자원 발굴 등이 그것이다.

① 현장상담 : 현장상담은 업소를 방문해 여성들과 상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우선은 업소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해서 안면을 익히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차 등을 나눠주면서 관계 형성을 시도, 상담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리기 시작한다. 일정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면 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여성의 문제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이외에도 현장상담에서는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용기와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며, 탈성매매와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법률지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현장 실태조사 :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업소 및 여성들 현황을 파악한다. 이때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과 협력할 수도 있다.

③ 예방 및 홍보, 지역사회자원 발굴 :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인근 유홍지역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로의 유입예방을 위한 out-reach 상담을 실시하고, 인근 지역사회에 성매매 문제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리는 작업을 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현장상담에 사용할 물품 후원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연계할 의료기관 빌굴, 보건소와의 협력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기능은 현장상담소가 설치된, 바로 현장에 대해 개입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장상담소의 현장성은 이러한 1차적인 지리적 현장성 이외에 상황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상담소가 설치된 현장 안에서 여성들과 업주들에게 쉽게 인지되고, 관할 집결지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일차적인 현장성 외에도, 그 현장을 거쳐간 여성이나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을 현장으로 상정하고 활동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는 위기개입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을 pick up하는 것이다. 상담소 자체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여형사기동대 등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업소에서 여성을 pick up 할 수 있다.

3) 경찰 수사단계에 대한 적극 개입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경찰 등 관련기관이 윤락행위의 예방 및 요보호자의 선도를 행함에 있어서 요보호자를 발견할 경우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활발히 이용해서 현장상담에 경찰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담과 시설보호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들이 이용할만한 복지서비스 관련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원에게 연락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수사단계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보호서비스체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현장 상담을 위한 인적·물적조건 마련

현장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인 1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구나 여성들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과 동일하게 상담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면 상근자 2인 이외에도 비상근 혹은 자원봉사자들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장상담소는 가형(단일형, 현장상담소형)과 나형(현장지소와 본상담소 분리형)에 따라서 그 규모는 상이할 수 있다. 되도록 관련 공공건물을 무상임대 받거나 기존 관련 기관이 있을 경우 그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고, 집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규칙 상담소 설치 기준에 의하면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형처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긴급보호시설,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담소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설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담소와 공간을 분리해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등을 병설하여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현장상담 때 배포할 수 있는 각종 물품구입, 일반 전화가 아닌 핸드폰을 이용한 상담을 위한 공무용 핸드폰, 전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위기상황 때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위기개입 때 신속한 연락을 위해 무전기,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pick up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상담소의 경우 전화번호 끝자리를 동일한 번호로 통일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 지원 홍보 강화~~

현재에도 불법채권무효에 대한 스티커와 책자 등을 집결지역내에 부착하거나 배포한 상태인데, 이렇게 문자화된 것보다 그림 등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포스터를 보건소, 경찰서, 집결지역내에 부착함으로써 탈성매매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선도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부분에서 선도일시와 중장기 보호시설이 유사한 관계로 통합해서 정리하였다.

첫째, 과도한 보호인원, 시설노후 및 협소한 공간 등 시설 환경 열악

선도중장기보호시설(이하 중장기)과 일시보호시설(일시) 모두 실제 정원보다 적정인원은 적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장기 경우 30~50명 정원에서 10~20명 정도를 뺀 20~30명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았고, 일시는 대부분 10명 정원에 6~7명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정인원은 시설규모상, 그리고 상담원의 사례관리 수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정인원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가깝게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현행 운영비 지급체계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역시 시설규모가 아닌 보호인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이 대다수인 중장기보호시설의 시설 노화, 프로그램실이 없거나 상담실을 구비하지 못한 일시보호시설의 협소한 공간문제는 시설에 대한 이미지나 거주자들의 시설 이용가능성,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이 가정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비단 시설 내 자율이 보장되는, 감금이나 통제 분위기가 아닌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정과 같은 안정되고 폐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인력 부족, 척박한 근무여건 및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

중장기의 경우 2002년도 4월말 평균 보호인원이 27명이었는데, 평균 상담원수는 2명이었다.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사무국장과 기술교사와 업무를 분장한다고 해도, 2명의 상담원이 27명의 보호인원에 대해 개별상담과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등 여러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상담원들의 평균 업무수가 4.16개였는데 5~8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이 전체 응답자 중 38.8%로 나타났고, 담당업무수가 적은 상담원보다 업무수가 많은 상담원이 10개 이상 사례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업무과중과 함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발휘를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시도 마찬가지로 평균 1명의 상담원이 있었는데, 평균 6.6명의 보호인원을 1명의 상담원이 관리,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업무는 평균 3.7개였고, 평균업무보다도 많은 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도 전체 응답자의 60%에 이르고 있었다. 수치상으로는 중장기보다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일시 보호시설이 입퇴소가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업무과중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해 많은 실무자들은 인력배치규정상의 인원이 배치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유탄행위동방지법 규칙 제7조 제2항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20명 미만인 경우 2명, 20명 이상인 경우는 3명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명의 상담원이 있는 시설은 3개 시설에 지나지 않았고, 선도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규정상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런 시설은 14개 시설 중 3개 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권익증진사업안내에 의한 실제 인건비 지급은 3인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상 인력마저도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과에 대한 요구는 높고,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운영, 개별상담 등을 수행하려면 상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은 전문성 가진 인력의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프로그램 질적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나 외부강사 등을 활용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프로그램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통합예산의 미실시 및 예산지원의 현실성 미흡, 전체 예산 중 높은 인건비 비중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예산의 경우 이미 시행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시설들에서는 통합예산으로 인해 융통성 있

고 효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미실시되고 있는 시설은 통합 예산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시설에서 통합예산방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권고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주지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 예산지원 방식이 시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들은 시설에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단가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필요한 내역이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원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상담원 확충과 관련된 인건비 부분, 보호인원 대비로 지급되는 현재의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적·시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항목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중장기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법적지원, 전문적인 심리치료 상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 항목이 없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시는 자립지원금, 교육비, 개인용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자원발굴 및 관리체계 미흡, 홍보체계 미흡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범인보조금과 후원금 비율이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정부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은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시설 자체적으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후원금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현금후원에 비해 물품후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았지만, 물품후원도 시설설비 차원에서의 일정비용이 소요되는 기자재 등보다는 소모품 중심의 생필품이 주류를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발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시설간 입소단계에서의 연계 미흡 및 입소당시의 시설적용을 위한 개입 미흡

중장기와 일시 모두 자발적인 입소가 가장 많았고 타기관으로부터의 연계로 인한 입소는 자발적 입소의 1/2수준이었다. 특히 중장기시설의 타기관 연계가 일시보호시설보다 낮았는데, 이는 일시를 거치지 않고 중장기로 직접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보호시설의 퇴소원인에서 보면 타기관으로의 연계비율보다도 무단퇴소 비율이 높았다.

중장기시설에서 직접 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일시보호기능을 겸하게 되는 결과를 놓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잊은 혹은 장기기출 등으로 인해 자유로움에 익숙한 현 입소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처음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입퇴소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장기 보호기간 동안 치료 혹은 자활을 준비해야 할 거주자와 입퇴소를 반복하는 거주자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일시와 중장기보호기능이 혼재되어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거주자들 관리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정정도 일시보호시설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선도보호시설은 중장기보호의 직업보도시설로 시작되어, 1995년 이후 법 개정이후 인성변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나 아직도 직업보도시설의 감금과 통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존하고 있고, 30명-50명을 보호하는 대규모의 시설과 인력부족, 직업보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의 태생적 한계 등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미지 개선이나 프로그램 전환 등에 있어서 제한점이 많은 상황이다. 선도일시보호시설도 90년대 후반에 설치되었는데, 시설의 인적, 물적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일반 청소년(녀)쉼터, 그룹홈 등과의 차별성이나 선도중장기보호시설과의 역할/기능 분담, 연계망이 명확하지 않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도중장기와 일시보호시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보호의 주요대상인 10대 가출청소년과 최근 적극적인 탈성매매 노력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선 시설의 물적, 인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출 및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차단, 소외, 배제된 상태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또한 문제의 복잡성 뿐 아니라 시설에 입소한 후 입퇴소를 반복하는 등 한두번의 프로그램이나 개입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자활/재활을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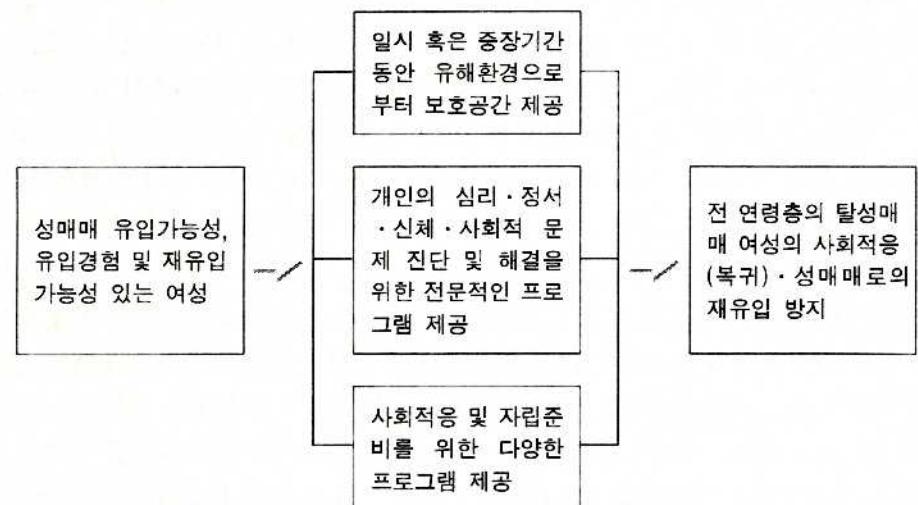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이후 인성변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지만 실제적인 인력충원이나 프로그램비 지원 등 물적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기엔 미흡했었다. 이후에도 선도일시보호시설 설치로 인한 선도보호시설의 양적확대, 인성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증액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선도보호시설의 개선에 대한 외부적 요구에 비하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설의 인적, 물적 여건의 개선과 함께 현행 선도보호시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론화, 체계화, 전문화 작업을 통해 보호대상 및 프로그램 특성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전문화, 다양화 등을 꾀하며,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장기와 일시보호시설 대부분 10대 가출청소년 위주로 보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거주자들의 성매매경험률이 중장기 30·50%, 일시 10%정도였는데, 표면화된 것에 근거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잠재되어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성매매 보다는 가출청소년 문제로 가시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고, 최근 들어 몇몇 중장기보호시설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탈성매매 여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 최근 들어 탈성매매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선도보호시설은 전연령층의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적응(복귀)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보호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 유입가능성, 유입경험 및 재유입가능성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일시 혹은 중장기간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심리·정서·신체·사회적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응 및 자립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선도보호시설 역할>



이를 위해 현행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은 ① 현행 10대 가출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이론화·전문화시켜야 하며, ② 현행 선도보호시설의 인적, 물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③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원(적용)을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행 10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이론화·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① 성매매 경험 있는 (가출) 청소녀를 주보호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② 중장기와 일시보호시설의 역할과 프로그램상의 차별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은 ③ 현행 프로그램 틀을 유지하면서 치료프로그램과 기초학력이나 진로탐색 등 사회적 지원과 자활준비를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며, ④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설정, 기본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을 평준화하고, 시설별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해선 성매매 경험에 대한 개입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성매매구조에 있었던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매매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성매매 구조에 있었던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 예를 들면 성학대의 경험, 마약, 에이즈, 폭력 등에 대해 소그룹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신체·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다양한 사회기술(social skill training) 향상훈련, 이들의 자긍심 증강(empowering)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연구원, 2001).

참고자료

- 김강자(2002), '한국의 매매춘 실태와 경찰의 대책', '각국의 성매매 실태 및 대책' 발표 자료집.
- 권순영(2001), '선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여성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세미나' 자료집.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다비타의 집(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윤덕경, 박현미, 황정임 외(2001),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여성부.
- 변화순, 황정임 외(2002),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성부.
- 보건복지부(1999), 「선도보호시설 백서」.
- 새움터(2001),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성매수대상 청소년, 보호처분의 효율적인 방안」.
- 신미식(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 원미혜(1996),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 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덕경(2001), 「법개정 방향과 개정안 제안」,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 이정미(2001), 「성매수 경험 청소년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성매수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 조아미·이명화(2001), 「성매매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이해」.
- 캐서린 H.S.문 지음. 이정주 옮김, 「동망속의 섹스」, 삼인.
- 한국여성연구원(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 황순길 외(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자료집.

전체 다써도 됨.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과 제안

유영님 (두레방 원장)

1. 서론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착취당해왔는지, 어떻게 그들 포주를 둘러싸고 있는 업소 집단들로부터 길들여져 왔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여성들에게만 집중돼왔던, 그들에게만 변화하라고 요구했던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장소에서의 적절한 치료와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는 여성들이 자기상처를 극복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기본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같이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한소리회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현장단체들은 여성들과 직접적인 만남과 사귐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 고통과 좌절, 그들이 처했던 환경에 분노하고 같이 고통하면서 그들을 돋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매 맞는 여성을 도와주려면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매 맞지 않는가를 가르칠 게 아니라 때리는 남편을 못 때리게 해야 하듯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도와야 한다면 그들을 둘러싼 성매매 시장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그 고객들로 하여금 성매매 시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 피해자였던 여성에게만 화살을 쏘았다.

한소리회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 모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문화에 대한 너그러움을 극복하고 성매매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근절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며, 성매매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를 비인간화시키고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2. 사회복귀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권력이 있는 사회 인프라가 확보된 정부기구와 여성들에 대한 애정과 이해, 경험이 있는 현장단체가 같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1) 정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루 속히 지금 준비 중인 성매매 법안이 통과되어서 성매매여성들인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산업을 활성화시켰고 결과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양산시키게 되었다. 성매매를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보지 않고 필요악으로 보았던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사회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2) 민간단체의 지원현황

민간단체가 지난 장점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보다 소중하다는 기독교정신을 실천해내고 있고, 물량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정신이 열악한 조건과 재정적 결핍을 극복하면서도 꾸준히 현장 활동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이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여서 여성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게 되었다. 현재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소리회 소속 회원단체들에 집중돼 있다.

가. 막달레나의 집, 쏘냐의 집, 사마리아의 집 등 성매매밀집지역에서의 지원 (1986년부터)
세 단체는 용산, 천호동, 길음동 집결지역에서 오랫동안 쉼터활동을 했다. 쏘냐의 집은 올해 서울시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현장상담소로 전환을 했고, 사마리아의 집은 몇 년 전부터 에이즈 쉼터로서 활동에 집중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활동을 접었다.

나. 두레방에서 경험한 프로그램들

두레방 활동 17여 년 동안, 두레방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기지촌 여성을 위한, 더 나아가서 마을 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장의 필요성과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또는 지속하면서 17년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계발되어 왔다.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인 여성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여성들

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은 실무자들의 혼신적인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다. 많은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생을 새롭게 보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주체로서 살고자 노력했고, 변화되었음을 분명하다.

두레방에서 수행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꿈이 있어요?”라고 하던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또는 요구되었던 프로그램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ㄱ. 일상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들

- ① 상담
- ② 두레방 뺑 프로그램
- ③ 공동식사 프로그램
- ④ 영어 교실, 한글 교실
- ⑤ 놀이방, 공부방 프로그램
- ⑥ 절기별 행사 및 야유회, 문화행사

절기별 행사는 명절이 되어도 대부분 일찍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가족이 없거나 또는 집에 갈 수 없는 처지의 여성들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이런 크고 작은 잔치를 통해 여성들은 각박한 일상에 위안을 얻고 이웃과의 풋풋한 정을 실감하기도 한다. 절기별 행사로는 추석 행사, 설날 잔치,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잔치 등이 있다.

기타 외국인 여성들을 위하여 최근 몇 년은 문화행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 풍물 동아리의 도움을 얻어 진행했던 길놀이라든가 캐리커처 그려주기, 만화 그리기, Face Painting 등을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⑦ 예배

두레방의 예배는 지역의 기지촌 여성들과 현장 출신 실무자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모두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일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두레방 개원 시기부터 줄곧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수준에 맞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자주 시도되었다.

ㄴ.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들

여성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성매매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성격상의 문제들이나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들이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활방식들을 털어버리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①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창작표현 활동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의 폐쇄된 욕구, 충동, 갈등 등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치유를 꾀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상호간 대화, 소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자각하고 인간관계의 적용을 돋는 건전한 사회화를 추구한다. 현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1회 진행된다.

② 취미교양교실

두레방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취미 교실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위해 요리 교실로 시작해서 뜨개질 교실, 지점토 공예, 목걸이 만들기, 여러 방식의 공예 교육 등 점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상을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자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공동 식사나 상담, 영어 교실 등을 통해 결합하였으며 이렇게 진행된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결속을 더욱 강하게 다져주었다. 또한 적절하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사진반, 마을문고, 한문교실 등을 운영, 짧게 수행되었다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여가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한다는 욕구를 읽을 수 있었고, 다양한 소질들도 계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은 9가지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다. 힘든 염색과정을 통해서 표현되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색깔내기 과정, 그 자체가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③ 컴퓨터 교육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며 기지촌 여성들에게 현실에 적합한 실제적 기능을 배양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직업재활의 기초를 마련한다. 두레방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의 한계는 명백하였으나 많은 여성들이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였으며, 배우고자 시도하였다.

3)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은성원

은성원은 중장기 선도보호시설로서는 한국 여성의 집과 함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여기에서는 은성원의 최정은 사무국장의 원고 중에서 발췌하였다.

가. 현재 선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현황

① 직업재활 프로그램 : 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홈페션, 제과제빵, 컴퓨터 기초과정, 웹디자인 과정 등

② 진학지도 :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검정고시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학원에도 다니게 하고 있다. 창원 여성의 집의 경우에는 직업재활교육보다는 대안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특화 프로그램 : 성매매 유입예방 프로그램,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 애니어그램 등 각 시설에서는 시설의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④ 문화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의 연극/영화 관람, 1년에 2회 정도의 아외캠프를 진행한다.

⑤ 취미, 운동 프로그램 : 심자수, 꽂꽃이, 도자기, 구슬공예, 종이접기 등의 취미교실과 재즈댄스, 헬스, 수영, 요가, 자전거하이킹 등의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⑥ 상담 프로그램 : 정기적인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사이코드라마 등을 실시하며 정신보건센터와 외부 신경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⑦ 의료지원 프로그램 : 입소자들에게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건강검진, 치과진료, 산부인과 진료, 피부과 진료, 신경정신과, 내과, 외과 등 본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에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의료 지원 네트워크는 잘 되고 있다. 특히 치과진료나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상담, 문신제거를 위한 피부과 진료 등은 입소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기타 자원봉사활동, 성교육, 에이즈 교육, 약물남용 예방교육, 금연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회 등을 조직하여 시설생활에 입소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수행의 어려움

① 입소자들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우 식상해 하고 있다.

② 성매매 문제에 개입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③ 직업재활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취업이다. 그러나 취업의 활로를 뚫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④ 저학력의 문제 : 선도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그들이 재활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 탈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① 개인적으로 실무자들이 갖는 성매매의 현황과 근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② 실무자들은 성매매문제에 대한 법적, 경험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③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미루고 있다.

④ 여성들의 지원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이나 그 지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다. 예를 들면 전문가 상담비, 특수치료비, 법적 지원비 등은 아예 없고, 항목도 10대 청소녀들 위주로 책정되어 있어서 20대 이상의 탈성매매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은 외면당하고 있다.

그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사회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층을 위한 지원

한국 성매매 밀집지역이나 기지촌 지역에는 일찍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노령화 되도록 탈성매매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이 여성들은 그 연령상 사실상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

동두천이나 의정부, 군산아메리카타운, 평택 등의 기지촌 지역, 이태원 시장골목 등지에는 4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 숫자는 대략 한 지역에 40~50명 가량으로 보이나 확실한 숫자는 한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다.

이 여성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60세 이전이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적절한 생계해결이 될 만큼의 지원액이 필요하다. 또한 무조건적 의료혜택이 지원되어야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 집결지에 같이 존재하는 40~50대 노령의 여성들에게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소리회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집결지 뒷골목에는 이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스스로 성매매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정착은 이제 까지는 시행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평택지역에는 노령의 기지촌 여성들만을 위해서 헛살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5) 해외에서의 사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①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세이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NPO(Non Profit Organization)로서 1993년에 성매매 된 여성들과 약물중독자들, 생존자들을 위한 단체이다. 세이지가 지난 특징 중 하나는 그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성매매 피해자였다가 생존자가 된 여성들이라는 점인데, 이 여성들이 지난 강점은 많이 있다.

- STAR(Sage Trauma And Recovery)

- Angel Cassidy

3.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1)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에서의 제안 : 은성원

① 예산부분

현실적인 예산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통합예산 실시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준이 시급하다는 것, 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하다.

② 인력부분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시행규칙을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과중한 업무 분담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실무자들이 이직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실성 있는 근무조건과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운영부분

제반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하나의 통일된 문서양식의 개발로 행정업무로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시설간의 정부 공유와 운영전산화를 위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각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때로는 정부가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2)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사업

올해 서울시와 한소리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깊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구체화된 제안들이 풍부하게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

① 성매매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운동은 성매매 안하기에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산업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고,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확산되게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②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이 사업은 성매매 현장 여성들의 바른 지원과 이해를 위한 상담원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현장 활동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을 몇몇 현장단체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정보의 사적 소유화를 극복하고 또한 여기에서 오는 편협한 운동방식이 극복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원 100시간 교육사업

현장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교육, 육성시키는 사업으로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양질의 실무자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여성들을 돋는 활동에 지속적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과 학문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바른 방향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④ 피해여성캠프 : 치료 프로그램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유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전환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3) 기타 : 쉼터

규모가 작고(20명 내외) 가족적인 쉼터가 도시마다, 지역마다 필요하다. 성매매 상담소와 위기 전화가 또한 도시와 지역마다 존재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여성 폭력관련 상담소들이 자체 네트워킹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동사무소 내에 상담원을 두고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한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성인용 시설확충 : 미혼모 생계비 3년 무상

② 심각한 장애 : 종합지원 센터, 에이즈 쉼터

③ 교육사업

- 지속적인 교육 : 구매자, 포주, 경찰, 검찰, 공무원

- 예방교육 : 잠재적 구매자를 위한 교육(초중고생), 비디오제작, 책자배포, 학교방문교육

- 길거리 교육 : 우범지역, 대학로 · 신촌 등 변화가, 지속적 · 한시적 쉼터

④ 지역 연계망

⑤ 성매매 지정병원, 상담전화개설, 쉼터개설

우리들의 노력이 연합하여 더 이상 성산업에 매매되어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한 걸음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서울시 중장기 계획 "다시함께(Seoul Together) 프로젝트"

신면호 (서울시 여성정책과장)

I. 사업추진 배경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성매매와 관련한 경제규모가 연 2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4.1%에 이르며 실제로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의 숫자가 33만 명이 넘어 15~39세 여성의 10%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여성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인신매매 3등급 이하로 평가되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성 윤리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성매매 억제와 산업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위해 최근 군산의 성매매 집결업소 화재참사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개발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2. 6월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또한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중요한 접근과제 중의 하나가 성매매 종사여성의 인권보호인 것이다.

서울시가 성매매종사여성에 대한 재활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대책이 알선업소 등에 대한 단속위주로 불법업소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보고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을 세계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뉴타운개발과 연계하여 서울시에 있는 성매매밀집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밀집지역을 정비할 경우 그 지역 종사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종사 여성들의 재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성매

매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시민운동도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및 성구매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성매매 산업의 확장을 억제하는 등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II. 사업의 추진 경과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매매 방지활동과 관련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수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였다. 성매매현장활동 전문단체인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자립지지공동체,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비롯하여 성매매방지법안 제정 등 성매매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 관련전문가와 6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성매매 종사여성의 실질적인 재활대책을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또한, 사업의 사회여건조성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도 10여 차례 이상을 개최하였으며 경찰청, 해당자치구, 시의회, 서울여성위원회와의 협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태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성매매 종사여성에 대한 재활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여론수렴창구를 개설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종사 여성들에 대한 재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III. 재활종합대책의 추진방향

서울시는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우선 재활대책을 시행하는 첫 해인 2003년에는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기본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매매예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성매매방지의 공론화·홍보 등 시민운동도 함께 전개 해나갈 계획이다.

2004년에는 기 시행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하드웨어 부분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정착 등 재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성매매종사여성의 사회적응 능력회복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재활의 기틀을 마련 할 것이다.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재활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정착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장기쉼터, 그룹홈을 설치하는 등 재활종합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해가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시범지역 우선 시행

2003년에는 서울시 5대 밀집지역 중 상대적으로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많은 성북구 월곡지역을 우선 시범실시 한 후 기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시행 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성매매밀집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종사여성 집결지역 및 현황

구 분	계	용산구 (역전)	동대문구 (역전)	성북구 (월곡)	영등포구 (역전)	강동구 (천호4동)
성매매여성수(명)	1,651	100	300	1,000	121	130
업소(개소)	537	60	120	261	48	48

2. 민간단체 위탁 시행

서울시에서는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전문단체 의견수렴과정에서 공공기관주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부감이 적고 현장활동경험이 많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재활지원센터, 쉼터 등 모든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기타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사업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시에서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IV. 재활종합대책 추진계획

서울시의 성매매종사여성재활대책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먼저 사회적 여건조성, 홍보, 공론화를 위한 사업과 현장활동가 및 성매매 전문상담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단계로는 성매매 현장에서의 초기접근 서비스를 위한 현장활동지소와 종합적인 재활지원센터의 운영과 탈성매매 여성의 보호시설인 쉼터를 설치하여 심신안정 및 채무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능력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3단계에서는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탈성매매여성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다.

마지막단계로는 사후관리를 통한 자조집단 운영, 장기쉼터, 장기 그룹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재활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 민간단체 등과 유관기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중앙부처(여성부), 시 경찰청, 관할경찰서, 교육청 등에서는 국고보조, 법령개정, 업소단속 및 현장활동 지원과 청소년 선도, 학교주변 정화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민간단체, 성매매예방활동 전문단체 등에서는 성매매현장 구조활동, 재활지원센터, 쉼터 등 시설운영과 정책자문, 그리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서울시 및 5개 밀집지역 구청 등에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제도적 측면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공동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3년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대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사회여건조성

1) 성매매안하기 범시민 운동전개

성매매종사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성매매방지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을 성매매방지 활동에 시민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성매매안하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길거리 선포식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여성계, 종교계, 학계, 연예인 등 상징적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자치구,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하며, 1개월간 Off-Line 형태의 길거리서명운동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On-Line 서명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 개최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앞서 사전 여건조성을 위해 제8회 여성주간에 실시되는 기념행사를 이용,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여성단체 연대모임과 남성단체 등 민간단체 등을 통한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이용한 성매매안하기 관련 행사를 정례화 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학강좌 등을 이용하여 남성들도 강좌에 참여토록 개방하고 여성학강좌내용에 성매매의 실태 등을 포함하여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회적

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2005년부터는 장기적으로 관련부서 등과 협의, 민방위교육 등을 활용하여 남성중심의 성매매 예방교육 등도 검토하고 있다.

2)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대책 마련 심포지엄 개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대책 마련과 시민단체의 성매매 예방활동 참여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관련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등 향후에도 성매매방지대책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으로 매년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및 종사여성의 재활에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관련한 연구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3) 성매매 현장활동가, 전문상담가 등 전문인력 양성

효과적인 아웃리치활동을 위하여는 현장경험이 있는 현장활동 전문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활동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성매매현장활동가와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제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관련분야 종사자 및 성매매 경험자, 일반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50여명의 현장전문활동가(필드워커)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여성복지상담소 담당자, 선도보호시설 상담원, 여성긴급전화(1366)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기법 등 전문 상담능력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종로, 강북 2개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도 금년의 교육성과에 따라 양성교육과정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교육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인원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에는 우선 서울시장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하여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서와 법령 등을 검토하여 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육수료생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수료생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수료자간의 네트워크 연계 등으로 현장활동 참여 및 상담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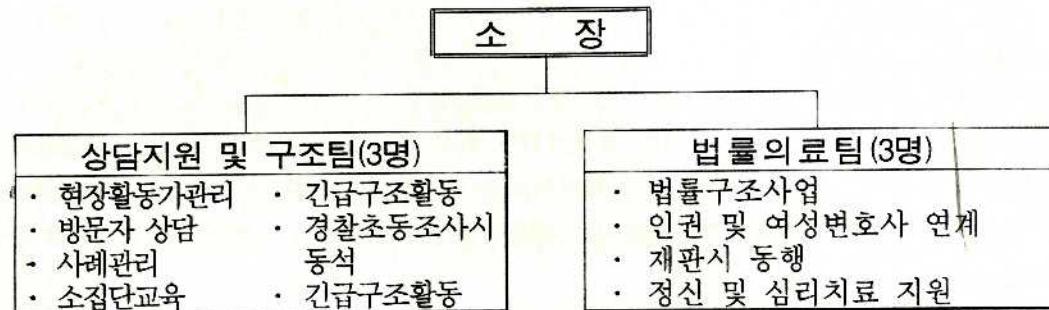
2.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지원시설 설치·운영계획

1) 재활지원시설 설치운영

성매매종사여성의 탈성매매를 도와주고 탈성매매한 여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주는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재활지원센터는 356일 24시간 운영하며 성매매 5개 밀집지역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로서 현장활동가 관리, 상담업무, 법률·의료 서비스, 소집단교육, 종사여성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 규모 및 설비 : 30~40평으로 면접·상담실, 긴급보호시설, 인근파출소 비상벨 연결 등
- 지원인력 : 상근직원(7명-상담지원·구조팀, 법률의료팀 등), 자원활동가(20명) 등

<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성매매 밀집지역 현장활동의 거점인 「현장활동지소」는, 성매매지역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위기개입, 긴급보호, 현장에서 종사여성에 대한 재활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2003년에는 우선 성매매종사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북구 월곡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할 것이며 2004년부터는 서울시 5대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2) 보호시설 설치운영

서울시에서 성매매 관련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모두 12개소가 있으나 주로 10대 청소녀를 위한 시설로 현재 수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호여성도 10대청소년들로서 20대 이후의 성매매종사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 서울시 선도보호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입 소 대 상	보호기간
계	12개소	· 현재 보호인원 130명 (대부분 10대청소년 - 70%)	
선도일시 보호시설	7개소	·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환경(기술·유품·접대부) 또는 성향 으로 보아 성매매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	2월 (1월연장)
선 도 보 호 시 설	3개소		6월 (6월연장)
장기그룹홈	2개소	·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	2년 (6월연장)

2003년 서울시에서는 우선 하반기 중에 성매매밀집지역과 원거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시설인 「쉼터」는 새로운 삶을 위해 출발하는 여성을 비밀리에 (1년 정도) 보호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은 물론, 검정고시, 직업훈련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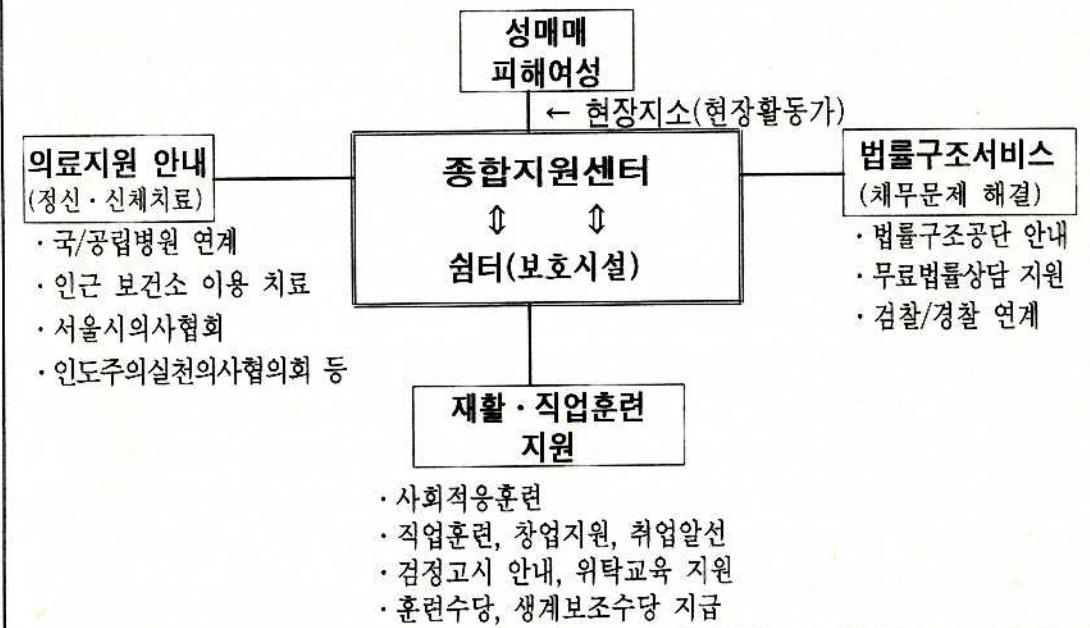
2004년부터는 탈성매매 여성의 점차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권역별로 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10대 청소녀 전문보호센터인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전문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기존의 보호시설의 우수한 운영프로그램을 상호보완 개선함으로서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종사여성의 재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규모 및 설비 : 30평(정원 10명), 주거공간(숙식제공), 인근파출소 비상벨 연결 등
- 지원인력 : 상근직원(3명-생활지도사 2명, 관리인 1명)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종합지원센터 및 쉼터(보호시설) 운영체계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프로그램 지원 및 보호시설 네트워크기능 연계



3) 보호시설 운영의 중장기 대책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되는 쉼터는 약1년간의 일시보호시설로 운영되므로 쉼터에서 일정한 재활훈련을 받은 여성 중에서 가족복귀 등이 곤란한 여성들을 위한 장기적인 공동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장기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이 장기쉼터는 개발계획이 본격시행 될 경우 집단적 보호대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한 대규모시설로서 기존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신축 등 시설을 확보하여 전문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는 장기쉼터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또한 재활에 성공한 여성들 중 가정복귀가 곤란한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공간인 그룹홈을 설치(2~3년간 거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성매매여성 재활프로그램 운영

1) 법률·의료지원단 구성·운영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재활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것으로,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 채불금 문제다. 성매매관련업소 유입 이후, 소개비와 선불금, 업주편의의 변칙적인 벌금 및 착취적인 이자구조 등으로 부채예속상황에 빠지는 일이 많다. 빚 액수에 따라 인신구속과 감금의 정도가 심화되고 도주방지를 위한 생활에서 업주 등의 폭력과 위협이 일상화 되어있다.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서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과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이로 인한 무기력과 자포자기 현상이 나타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선불금 등 채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초기에 중점지원이 필요한 무기력한 심리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정신치료 등 의료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봉사 중심의 「법률·의료 지원단」을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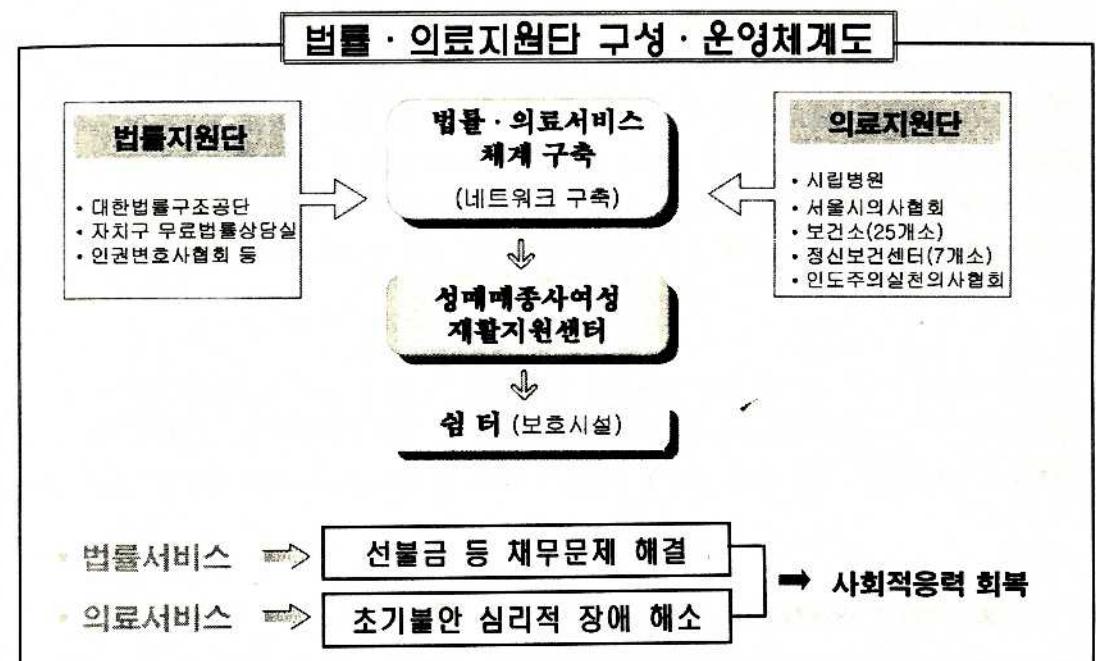
지원단의 구성은 「법률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분운영 할 예정이며 인원은 각각 30여명으로 총 60명으로 구성한다.

법률지원단은 피해자 사건조사시 초기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소송대리지원과 소송시 무료변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지원단은 탈성매매후 초기불안 심리적 장애 해소, 정신과 치료 및 기초적인 질병치료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단의 모집은 모든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이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권변호사협회, 정신보건센터, 서울시의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의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도에는 법률·의료지원단 구성을 확정하고 발대식 등 결성모임을 통하여 지원단 활동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구체적인 활동방법 등을 모색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여 지원활동을 시작 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는 법률·의료지원사례 및 성매매종사여성의 피해실태 연구, 효율적인 지원방법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종사여성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 재활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강화

탈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탈성매매여성 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직업훈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5개소)를 비롯하여 직업전문학교(4개소), 고용촉진 훈련기관등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노동부 등 취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2003년에는 탈성매매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교육 수료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훈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훈련에 참가중인 여

성에 대하여 훈련수당, 가계보조수당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으로 기술을 습득한 여성 등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자금지원, 창업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재활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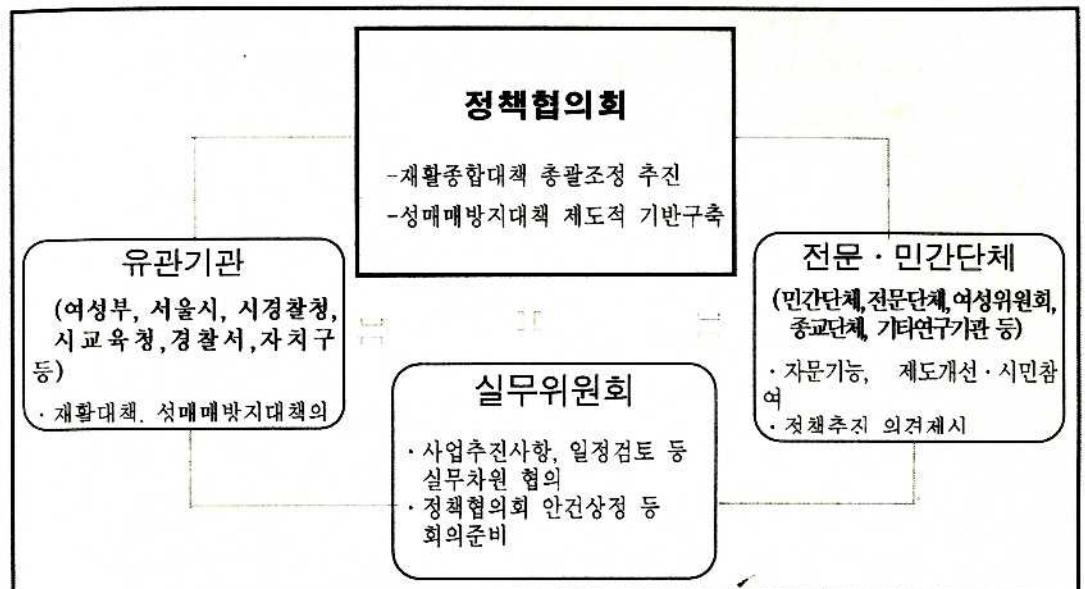
2004년부터는 재활을 위한 각종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재활지원센터 및 쉼터에서의 법률·의료지원과 소집단 교육 등을 통해 심리안정 및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해 재활의지를 가지게 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직업 훈련, 취업 및 창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수당, 가계보조수당 및 창업자금 등을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보호시설을 통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제공해줌으로써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재활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탈성매매 성공여성들의 자조집단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으로써 성공사례들을 파급하여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의지를 돋고, 현장활동, 성매매 상담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4.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 운영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협의회의 구성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22명으로 유관기관 10명, 민간단체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 재활종합대책을 총괄조정하며 성매매방지대책 관련 제도 개선, 법령개정건의 등 기능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는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6명, 민간단체 9명으로 구성되어 실무차원의 협의 및 정책협의회 안건 등을 조정 상정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운영은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다.

<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체계도 >



V. 맷는 말

우리나라 성매매종사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종사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은 주로 성매매의 예방, 단속, 그리고 선도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재활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서울시에서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첫걸음을 내딛었다.

서울시에서 이번 재활대책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전국에서 모두 308명이 응모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심사결과 "다시함께(Seoul Together) 프로젝트"로 정하였다. 이 명칭에서의 "다시"는 성매매종사여성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재활의지의 표현이며, "함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데도 성매매종사 여성들만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모두 함께 도와주고 지원해 주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명칭의 의미와 같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종사여성의 재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만의 레인보우,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처럼, 서울시의 "다시함께"(Seoul Together)프로젝트도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재활종합대책을 전문·민간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다.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계획이 성매매종사 피해여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로,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인권이 유린되는 성매매 여성의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매매관련 전문단체, 민간단체 등을 비롯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성공적인 재활대책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전 우섭(다비타의 집 대표)

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의 경제규모가 24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¹⁾ 이는 국내 농림어업부분 생산액(4.4%)과 맞먹는 규모다. 또 20-30대 여성인구 100명중 4명이, 같은 연령대 여성취업자 기준으로는 100명중 8명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000여 사창가, 유홍주점, 이발소 등 성매매 가능업소를 표본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면서 국내 성매매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최소 3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²⁾

이 중 유홍주점업소, 마사지 업소,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거래규모가 16조 5,000여 억 원으로 성매매 집결지(사창가)에서 거래되는 규모 1조 8,000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제는 성매매가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2년 기준 전국 69개 성매매 지역에 있는 3,000여 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9,000 여 명이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1인당 연간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제 성매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 넘치는 향락문화, 넘치는 성지식 그리고 끝없는 인간들의 욕망 속에서 성매매는 더욱 상품화되고 다양화, 수평화,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³⁾

지금 새로운 법률안인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인준

1. 「국민일보」 2003년 2월 6일

2.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성산업 규모와 성매매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2003년 2월 5일 발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많은 차이점이 나고 있다. 한국여성 민우회는 120여만 명으로 15-29살 여성 전체인구의 2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2일)

3. 전우섭,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1997, p.1

을 바라보고 있지만 새로운 신종 성매매(전화방, 인터넷, 휴게텔 등)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어떻게 협력하여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패러다임 된 시스템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매매 정책의 문제점

① 심야 영업에 대한 허용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그동안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해 왔던 심야 영업권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각 지역의 상권과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성매매 업주들이 제일 먼저 심야 영업에 뛰어 들면서 성매매를 활성화시켰다. 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⁴⁾ 1995년 10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심야영업이 시행되었다.

한국 유흥업 종양회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들의 사무실로 20여 쪽에 달하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내면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고통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다.⁵⁾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산업발전 위해 심야영업을 차별적으로 해제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향락문화만 더욱 번성하는 결과를 놓게 되었다.

대표적인 성매매자유 단체

② 관광특구의 남발

1996년 10월 1일 문화체육부는 전국 6개도 9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예고하였다. 문체부는 11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이를 지역을 관광특구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지정 예고지역 : ▲경기도 평택시 송탄(신장 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동두천(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부) ▲충북 수안보온천(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속리산(보은군 내 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충남 아산시온천(온천1,2동, 권곡동, 모종동, 득산동, 방죽동, 도고면 기곡리, 선창면 신서리, 응봉면 신수리, 산정리 일원) ▲보령해수욕장(보령시 신혹동, 남포면 월전리, 응천읍 관당리 일원) ▲전북 무주 구천동(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무풍면 삼거리 일원) ▲전남 구례(산동면, 마산면, 광의면, 토지면 일원) ▲경남 부곡온천(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부곡리, 사창리 일원)】

특구로 지정받은 지역들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YMCA, 기윤실 등에서 성명을 통해 대안 없는 심야영업해제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5. 「NEWS+」 1996년 11월 14일

카지노, 술집 등 성매매 산업이나 성매매 유발산업 등의 사업계획이 반영되면서 향락산업이 확대되는 결과를 놓게 되었다.

③ 외국인 유흥업소 개설 허용

1997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술집, 나이트클럽, 섹스숍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1995년 11월 14일 한국정부는 개방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제 유흥업소는 외국의 자본이 대거 밀려오고 더욱 국제화, 조직화, 합법화된 성매매가 성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외국의 유흥업소의 진출을 허용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길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된 것이다.

④ 요보호시설

1946년 5월 17일 법령 제 70호에 의해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의 금지” 포고령이 내려졌고, 1947년 7월 14일 법률 제 7호에 의해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그리고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는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성매매에 대한 특정지역 설치 내용에 관한 규칙이 1962년 4월 발표되어서 내무부, 보건사회부, 법무부 공동으로 특정지역(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등 32개 기지촌)을 허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9년 11월 윤락여성 선도 대책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구성되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성매매 집결지 등 번창하는 결과만을 놓게 되었다.

1972년 민간단체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 내무부에서는 지역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부터 1983년까지 기지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실시되었다. 1995년 1월 5일 계속 불합리성이 지적되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으며 1996년 1월 6일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제7조, 8조에 의거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호지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을 통한 지도와 병행하여 본격적인 성매매 여성 수용시설 등을 만들게 되었다.

1971년 4월 20일 성매매 여성 직업보도 기관으로 양주군 여자 자동차 기술학원이 만들어졌으며 1984년 1월 1일 경기여자 기술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서울 상봉동에 본원과 동두천에 분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도 말 서울에 있는 본원과 동두천 분원이 합쳐져서 경기도 신갈에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이 설립되었다. 1994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수용시설인 서울시립 여자기술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과정이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 말미암아 폐쇄되었고, 1995년 8월 21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갈의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이 원생들의 방화로 인하여 53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고 잠정폐쇄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성남시의 동부여자기술학원도 결국 성매매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였다. 요보호시설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놔둔 채 성매매 된 여성만을 가두어 놓고 선도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에 큰 문제점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⑤ 사창가의 정책대안 없는 폐쇄

1994년 12월 대만 야당의 민진당 출신 진수편 시장이 취임한 타이베이시는 사창가 폐쇄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장 임명권을 손에 쥔 진 시장은 퇴폐업소만 보이면 경찰서장을 들을 집합시켜 퇴직이냐 사창가 폐쇄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경찰서장들은 자신들의 밥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창가를 폐쇄시켜갔는데 그 방법은 즉각 영업정지와 단전, 단수를 6개월 이상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타이베이시에서는 사창가가 사라지게 되었다.

1996년 7월말 대구 이재용 남구청장은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90여개의 유흥업소와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였다.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시행한 그의 의로운 투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결국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하고 단속방법과 결과 등을 배워가는 순례지가 되었다. 1997년 9월부터 강동구청을 필두로 천호동 사창가에 대한 폐쇄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영등포구청의 신길동 사창가의 강제철거와 단전, 단수 실시되고 김강자 서장과 성북구청의 미아리 텍사스촌, 성동구청의 화양리 사창가에 대한 강제 폐쇄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다.⁶⁾

사창가는 분명히 폐쇄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공창제도는 논의조차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대안 없는 폐쇄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타이베이시의 사창가 폐쇄는 결국 주변위성도시로의 확산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되었다.⁷⁾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에서의 대안 없는 강제 폐쇄는 파주 용주골, 평택, 의정부 등지로 성매매가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매매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주택가로의 확산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10명단위로 묶어서 주택가로 파고들게 하였으며 P.C 통신을 이용한 대화방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정책대안 없는 사창가 폐쇄는 3가지 부류의 사생아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는 성매매업주들에 의해 성매매 여성들을 위성도시로 이동시켜 확산시켰으며, 둘째는 새로운 성매매산업(사이버섹스 등)을 등장시켰으며, 셋째는 주택가로 은밀하게 파고들게 만든 것이다.

어느 한 지역만 폐쇄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확실한 대안과 의식변화가 있어야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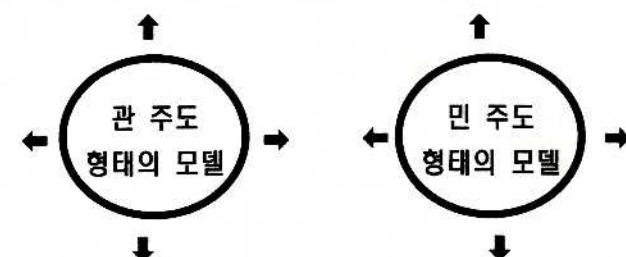
6. 「뉴스피플」 1997년 10월 16일, p.22-23.

7. Ibid,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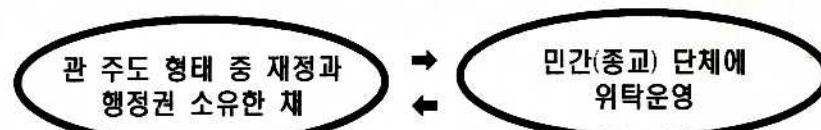
3. 시스템 개발을 통한 민·관 협력 방안

① 성매매 해결을 위해 기존에는 2가지의 형태의 시스템이 있었다.

① 대립적인 시스템



② 위탁운영 시스템



처음에는 관 주도의 형태와 민주도 형태가 따로 있었으며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흘러가 서로 협력이나 대화 대신 서로에 대한 상호불신이 많이 있었다. 그후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관이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소유한 채 민간(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여자기술학원 같은 요보호 시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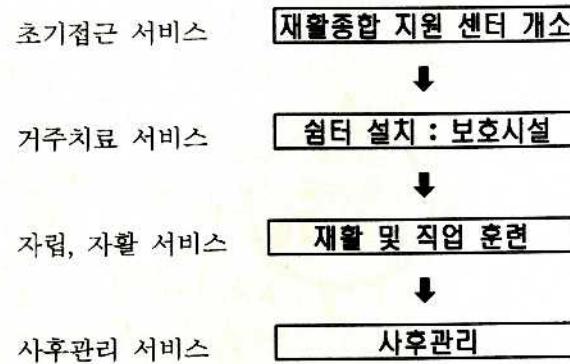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위탁운영도 몇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정부가 만들고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도권이 정부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2개(정부, 위탁운영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창조적인 마인드가 나올 수 없었다. 또한 재정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정부측 입장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간에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며 실무자들 내부에서도 줄서기가 생겨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곤 하였다. 그럼 어떤 정책과 협력방안이 나와야 하는가?

* The system of two

2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져야 한다. 민간단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있고 정부기관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간단체가 담당해야 더욱

효과적인 분야가 있고, 정부기관이 담당해야 더욱 효과적인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기획안 2가지가 나와야 하며 이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⁸⁾



또한 종합지원센터 1개소, 현장활동지소 5개, 단기 쉼터 5개, 장기 쉼터 1개, 그룹홈 1개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⁹⁾ 위의 종합대책 중에서 재활종합지원센타와 쉼터 설치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아니라고 본다.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안에는 오랜 기간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던 17개의 단체가 있다. 만약 기존의 민간단체 외에 정부에서 쉼터를 새로 설치하고 현장활동 지소를 새로이 설치한다면 이것은 상호협력이 아니라 상호 경쟁관계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쉼터를 만들어 놓고 위탁 관리를 민간단체에게 넘긴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2개의 시스템이란?

- ① 정부는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분야 즉 자활 및 직업훈련, 성병 및 질병관리, 전국적인 성매매 종사자 예방활동, 행정력 및 공권력 동원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정부는 쉼터나 일반지원센터를 기존의 민간단체 중에서 지정, 위임하고(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지만 따로 쉼터를 만들거나 혹은 쉼터를 만들어서 위탁운영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말고) 성매매문제를 전문적으로 예방, 치유, 재활, 연구할 수 있는 통전적인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민간단체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자생력을 키우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정 혹은 인준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민간단체는 설립된 본래의 취지와 그동안의 노하우에 걸 맞는 전문화, 특성화가 되어야 한

8. 서울특별시, “성매매 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 추진계획”, 2003 p.1

9. 서울특별시, “성매매 방지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2003.6.3, p.5

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system

- ⓐ 통전적인 전문 종합지원센타
 - 질병관리
 - 자활 및 직업훈련
 - 성매매 종사자 예방
 - 연구부서
- ⓑ 공권력 동원, 법률지원
- ⓒ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민간단체 system

- ⓐ 기존의 시설(쉼터) 인준 혹은 지정
- ⓑ 각 단체별 특성화
(상담, 교육, 신고, 홍보, 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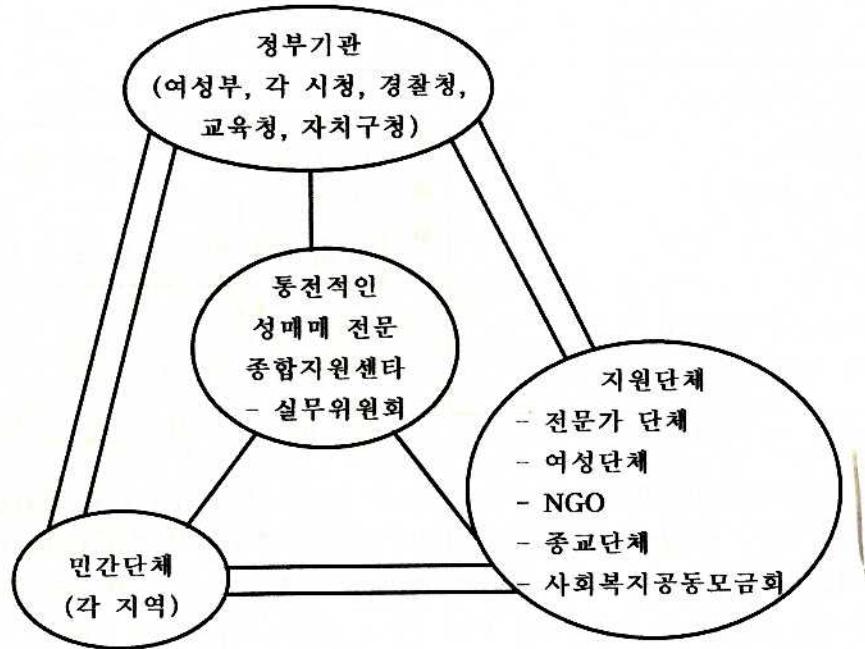
정부는 정부대로 고유정체성을 가지고 system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 역시 고유 정체성을 가지고 system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환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간단체가 담당하기 힘든 분야 혹은 성매매 피해여성 을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시켜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설립목적에 의한 진행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② The system of Three for a Network

2개의 system이 운영되고 있다면 3개의 기관(정부기관, 민간단체, 지원단체)을 네트워크 시켜야 한다. 먼저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지원단체는 지원단체대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된 상태에서 두 번째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원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내놓고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내부적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3개의 단체를 네트워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3개 단체의 네트워크를 위해 정부주도의 통전적인 성매매전문 종합지원센터가 중앙통제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 정책 협의회>



정책협의회는 단순히 모여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지원단체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해야 하며 나라 전체에 새로운 의식변화(성매매 안하기,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③ 사창가 재개발에 대한 협력방안

정부와 민간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창가폐쇄 혹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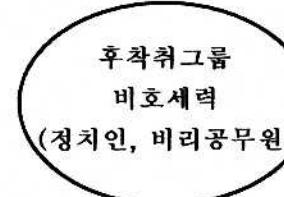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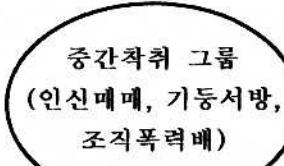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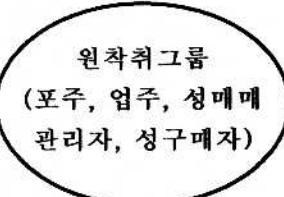
① 사창가나 유흥장을 폐쇄하기 전에 성매매 종사자들을 사회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이 민.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② 2가지의 전술을 적용시켜야 한다.

ⓐ 먼저 성매매 종사자들과 성매매 착취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을 통해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착취그룹을 대상으로



행정적(업무정지, 세무조사 등), 법적(성매매 방지법 등), 물리적(단전, 단수, 공권력 동원 등)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성매매 설명제를 통해 착취그룹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④ 성매매 업주와 공기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에 대한 협력방안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국가에서 벼짓이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비호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들은 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연히 비호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력도 연합하여 제거시켜 나가야 한다.

ⓐ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시정활동을 감시하고 성매매 방지법 등을 실제화시킨다.

ⓑ 성매매 활성화를 위한 압력단체(상가번영회, 특수업태부 연합회 등)에 대해 언론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무력화시킨다.

ⓒ 비호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민간단체 주도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 비호하는 공권력을 암행감찰과 신고서 설치 등을 통해 발본해 내고 조치를 취한다.

⑤ 성매매 방지법 시행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유흥 음식 중앙회에서는 자체 회보인 “서비스월드” 2002년 11월호 별책부록으로 성매매 현장에서 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여성들에 대한 명단을 제작하여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¹¹⁾ 이들은 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여성들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피해액(선불금) 등을 기록한 책자를 업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서울 관내 한 경찰서로 찾아가 협조를 구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여성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2002년 12월 9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¹²⁾ 빠른 시간내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없애고 성매매 조직과 이에 노출된 여

10. “끈끈한 돈줄 유착--- 결리는 게 이상”, 「동아일보」 2000년 9월 3일
“미아리 윤락업주 상납계조직 경관들에게 7억 뇌물”, 「문화일보」 2000년 11월 4일

11. 「여성신문」 2002년 12월 20일

12.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매매 피해자 명단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성의 인권보호와 중간착취고리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¹³⁾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유지
- 다양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 청소년과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 몰수
- 내부고발자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
-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 처분
- 국제적 성매매 방지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명시 등이다.

4. 나오는 말

성매매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중독되기 전에 예방이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 모두가 성매매 종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성매매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건전한 국가 정책과 사회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실한 가정, 건실한 국가, 건실한 정책, 건실한 사고가 잘 조화될 때 성매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개인, 단체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니 전 국민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3) 「한겨레신문」 2002년 7월 29일, 2002년 7월 25일 여야의원 74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공동발의 되었다.

↳ 학인래 쓴 것.

참고자료1

선도보호시설의 탈성매매 여성
사회복귀지원 현황과 과제

온성원 사무국장 최정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도보호시설의 어제와 오늘
3. 선도보호시설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현황과 문제점
 - 1) 선도보호시설의 현황
 - 2)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과 어려움
 - 3) 탈성매매 여성 지원의 어려움
4. 국가 지원 시설 운영의 장단점과 요구 사항
 - 1) 국가 지원 시설 운영의 장단점
 - 2) 요구 사항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거론" 자체가 금기시 되어왔던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인 개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통과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 시점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5명 사망,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많은 국민들과 여성단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제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준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관이 주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통제"를 하고, 그에 맞서 민간단체들은 "견제"를 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서로의 위치에서 작은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성매매 근절"이라는 대명제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선도보호시설의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민관의 협조 하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책적 요구 사항을 건의해 보고자 한다.

2. 선도보호시설의 어제와 오늘

선도보호시설의 역사는 1962년 [윤락행위등방지법], 1969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의 한직업보도설치기본령]이 제정되면서 "부녀보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부녀보도시설"은 여성들이 생활고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기

술을 가르쳐 건전한 생활로 자립 간생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부랑여성 등 요보호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보도와 수용보호를 제공하였다(선도보호시설백서, 1999). 본격적으로 선도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된 1995년 이후부터이다.

1989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전의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수용보호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95년 8월 21일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의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 현재의 자율적인 운영방식에 이르게 되었다.

선도보호시설은 1996년 전국적으로 12개의 시설에서 2003년 6월 현재 일시보호시설 15개, 장기보호시설 11개 등 총 26개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 개정 이후 "인성변화교육"을 위주로 하여 종전의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시설의 이미지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전에 비해 시설의 입소 및 행정절차,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향상 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이미지"란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마음먹었다고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때나마 정부가 개입하여 그 여성들을 통제했던 기억들은 어쩌면 모든 선도보호시설들이 끝까지 지고 가야할 "숙명"인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선도보호시설은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보호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즉 10대 가출 청소녀들을 잠재적인 성매매 종사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10대 청소년들의 가출이 모두 "단순 가출"만은 아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10대 청소녀들의 성매매 경험을 "성매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가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 선도보호시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라 할 수 있다.

3. 선도보호시설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현황과 문제점

1) 선도보호시설의 현황

2003년 5월 현재 선도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총26개(일시보호시설 15개, 중장기보호

시설11개)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않다.

1998년도에 13개의 선도보호시설에서 2000년 들어서부터 시설의 수가 급증했던 이유는 10대 가출 청소녀들을 보호하고 있던 쉼터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도일시보호시설로 등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보호시설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보호시설

보호기간은 2개월이며, 1회 연장하여 총 4개월간 보호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은 10명 내외이며, 대부분 가정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총 4개월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일시보호시설은 일시 보호의 기능보다는 그룹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입소자들의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입소자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성매매"에 두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여 "가출 청소년의 문제"로 두고 있다. 그 외에 몇몇 일시보호시설은 "성폭력"과 "미출모"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 중장기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하여 6개월 연장하여 총 12개월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보호기간의 규정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결과 현재에는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재입소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장기보호시설 역시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가출 청소년"에 두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개방한 시설은 한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입소 정원이 50명, 70명씩 되는 대형시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지방의 몇몇 선도보호시설은 입소자들을 통제하면서 검정고시 공부에 주력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신축되고 있는 시설은 입소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도 의도적으로 입소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0, 30여명이 넘어서면 상담원의 수가 2,3명인 상태에서 24시간 근무하는 현 시스템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입소자들의 수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의 몇몇 시설은 현대식 시설을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60년대에 지어진 시설들이다. 시설의 외관이 매우 노후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선도보호시설전국협의회가 가장 최근에 시설 입소자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1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의 입소자 현황

- 총26개 시설 중 22개 시설(일시 14개, 중장기 8개) 참여

1.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일시보호시설	10세 ~ 19세	20세 ~ 25세	26세 이상	계
2002년도	1051(88.2)	102(8.6)	38(3.2)	1191(100)
2003년도	408(84.3)	61(12.6)	15(3.1)	484(100)
중장기보호시설	10세 ~ 19세	20세 ~ 25세	26세 이상	계
2002년도	268(65.8)	95(23.3)	44(10.3)	407(100)
2003년도	101(66.9)	42(27.8)	6(4.0)	151(100)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선도보호시설이 10대를 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 시설보다는 일시 보호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입소 동기 구분

단위: 명(%)

일시시설	전통형 성매매	티켓다방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상습가출	기타	계
2002년	49(4.6)	126(11.9)	86(8.1)	148(14.0)	145(13.7)	290(27.4)	213(20.2)	1057(100)
2003년	44(10.1)	52(12.0)	34(7.8)	42(9.7)	91(20.9)	105(24.1)	67(15.4)	435(100)
장기시설	전통형 성매매	티켓다방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상습가출	기타	계
2002년	99(24.3)	98(24.1)	48(11.8)	8(2.0)	27(6.6)	106(26.0)	21(5.2)	407(100)
2003년	39(25.8)	31(20.5)	24(15.9)	5(3.3)	14(9.3)	35(23.2)	3(2.0)	151(100)

입소 동기 구분에서 탈성매매 부분을 전통형, 티켓다방, 청소년성매매로 세분화하였으며, 일시 보호시설보다는 중장기 보호시설이 탈성매매로 인한 입소 동기가 훨씬 많았다. 중장기 보호시설의 경우 2002년도에 총 60.2%가 탈성매매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이고, 2003년도 4월 30일까지의 현황에서는 총 62.2%가 탈성매매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일시 보호시설도 2002년도에는 24.6%, 2003년도 4월 30일까지의 현황에서도 29.9%나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선도보호시설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을

보호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들과 매우 상반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는 탈성매매 청소년과 성인여성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연령"만을 가지고 그들을 구분 지으려 했으며,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자세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밝힌 "성매매의 경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 가출"로 인식하여 그들의 문제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성매매 여성들이 입소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질실히 원하고 있는 "법적 지원"은 민간단체에게 일임하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서 한발 물러선 지원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적 지원"인 것이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시설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상담원과 입소자간의 라포 형성이 매우 깊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도 보호시설에서는 인력과 경험의 부족, 상담원 개인의 의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포기하게 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하여금 선도보호시설이 탈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드러나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의, 식, 주의 해결만이 시설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입소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함께 노력했을 때 시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과 어려움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보호시설에서 실제적으로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성매매방지대책연구, 2001). 그러나 최근 들어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척박한 상태인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대 이상의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지만 기존 선도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로 선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며 몇몇 시설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특화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한다. 이에 간단히 선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흡연cess, 제과제빵, 컴퓨터 기초과정, 웹 디자인 과정 등

은 시설에 교육기자재와 강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여성발전센터나, 외부 사설학원 등에 연계하여 다니게 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업재활교육으로 간병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진학지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검정고시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검정고시 학원에도 다니게 하고 있다. 창원여성의 집의 경우에는 직업재활교육 보다는 대안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

성매매유입예방 프로그램,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 애니어그램 등 각 시설에서는 시설의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 지원금(공동모금회, 여성발전기금,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외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유입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를 10대와 20대 초반의 탈성매매 여성에게 제한되었으며, 그 외의 프로그램들도 10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문화 프로그램

월 1회 이상의 연극, 영화 관람 등의 기회를 가지며, 1년에 2회 정도의 야외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문화적 혜택은 연계활동을 통하여 많이 지원받고 있다.

■취미, 운동 프로그램

십자수, 꽃꽂이, 도자기, 구슬공예, 종이접기 등의 취미교실과 째즈댄스, 헬스, 수영, 요가, 자전거하이킹 등의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상담 프로그램

생활시설인 관계인 담당 상담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개별상담이 있으며, 상담기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싸이코 드라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와 외부 신경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의료지원 프로그램

입소자들에게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건강검진, 치과진료, 산부인과 진료, 피부과진료, 신경정신과, 내과, 외과 등 본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네트워크는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특

히 치과진료나 산부인과진료, 신경정신과 상담, 문신제거를 위한 피부과 진료 등은 입소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 자원봉사활동, 성교육, 에이즈교육, 약물남용예방교육, 금연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회 등을 조직하여 시설생활에 입소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입소자들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우 식상해하고 있다.

입소자들의 시설 거주 경험이 매우 다양하므로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것인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예전의 기억(흥미롭지 못함, 어려움, 재미없음 등)을 떠올려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떨어지게 한다.

- 성매매 문제에 개입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동기만 보더라도 일시 보호시설의 경우 24% 내외, 중장기 보호시설의 경우 60% 내외의 경우가 탈성매매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인데 반하여 성매매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나름대로 "성교육"에 비중을 두어 진행하고는 있지만 성지식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다.

황정임(2002)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쉼터와 선도일시보호시설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일시보호시설로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녹아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 직업재활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사실 직업재활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입소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릴 만큼 그들의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시로 변하는 그들의 욕구와 의지력에 실무자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컴퓨터 교육만 보더라도 시대적으로는 너무도 잘 맞는 것이지만 20대 이상의 성인여성들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의 대상이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다. 가장 빠른 시간에 훈련받아서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직업재활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활로를 뚫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 저학력의 문제

선도보호시설 입소자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갖고 있다. 나름대로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학력취득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고 싶어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였다.

선도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 취득)가 있다면 그들이 재활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탈성매매 여성 지원의 어려움

대부분의 선도보호시설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의 지원에 있어서 약간씩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선도보호시설은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생활시설이며 적게는 15명부터 많게는 50, 60명의 인원이 있는 시설들이다. 또한 탈성매매에 대한 문제만 있기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개인적 측면

■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도보호시설의 실무자들은 성매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매매는 어쩔 수 없다!"는 "필요악"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근절되지 못하고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의 현황에 대한 "포기"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식들이 성매매의 문제에 대하여 최 일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머뭇거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성매매 문제에 대한 법적, 경험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선도보호시설의 실무자들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법적 지식과 정보 공유에 관하여 선도보호시설전국협의회에서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의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무자 자신도 일단 뛰어 들어서 경험하며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실천적 자세가 각별히 요구된다.

정부 지원의 측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미루고 있다.

현재 선도보호시설은 법적 종사자 인원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 분담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높은 이직률로 나타난다.

상담원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상담일지 작성)을 비롯하여 행정업무(입, 퇴소 관련 행정 서류가 많음),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섭외, 입소자들과 가족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생활지도 등 기존 업무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법적 지원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조사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시간외 근무 수당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실무자들을 위한 재교육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인간"들이 해내는 일이다. 그렇듯이 일할 사람들을 길러내고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실무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나마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전무한 혐편이다. 전문가 상담비, 특수치료비, 법적 지원비의 항목은 아예 만들어 있지도 않고 있으며, 예산 항목의 많은 부분이 10대 청소녀들 위주로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통비, 간식비, 교양도서비, 학용품비 등은 19세 미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0대 이상의 탈성매매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 상담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과 한계가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국가 지원 시설 운영의 장단점과 요구 사항

1) 국가 지원 시설 운영의 장단점

국가 지원 시설 운영의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국가 지원 시설이나 미지원 시설이나 모두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책임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게 되니 무엇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기적인 감사(지도감독)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한 차례 평가를 받았었고, 올해에도 평가 계획이 잡혀있다.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대단히 많다. 어떤 시설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폐단도 있지만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 지난 2000년도에 평가를 받고 나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들수록 그것들을 잘 기록하여 결과물을 남겨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됨을 느꼈다. 결국은 외부에서 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시설에 들어와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남겨진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밝혔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쓸 때에는 그 용도가 얼마나 타당성 있게 사용되어 졌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시설은 미지원 시설들에 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한결 여유로울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요구 되고 있는 제반 서류와 각종 행정절차 등은 늘 실무자들을 힘들게 만든다.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효율성에 비추어 보아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도 적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실무자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정부 예산 주는 것을 꼭 공무원 자신의 주머니에서 주는 것인양 생색을 내고, 불필요한 비사무적 태도와 함께 시설의 운영 실적을 수량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많았다.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 지원 시설은 때로는 대외적으로 시설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다. 일단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종의 "incentive"가 될 수 있다.

장점	단점
1.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1.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
2. 재정적 뒷받침이 안정적이다.	2.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전시 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
3. 정기적인 관리, 감독으로 시설 운영의 질이 높아진다.	3. 제반서류와 행정절차가 많아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
4. 대외적으로 시설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준다.	4. 때로는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치명적 영향을 줄 때가 있다.

2) 요구 사항

이제까지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요구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크게 예산 부분과 인력, 운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가장 먼저 예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예산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통합예산 실시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준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력 부분은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시행규칙을 보완하여야 한다(황정임, 2002). 현재 과중한 업무 분담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실무자들이 이직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실성 있는 근무 조건과 인건비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부분에서는 제반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하나의 통일된 문서양식의 개발로 행정업무로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간의 정보 공유와 운영 전산화를 위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각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때로는 정부가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매매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으로 성매매의 문제에 접근하여야 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외적 홍보활동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국가와 시설간의 독립한 partnership 이 강화되었을 때만이 가능해 질 것이다.

구분	요구사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시설간의 partnership 강화 ■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주력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예산 지원 기준 마련 ■ 통합 예산 실시 ■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준 마련 ■ 기능 보강 관련 예산 확보 / 전반적으로 낮은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개선 / 윤방법 시행규칙 조정 ■ 현실성 있는 근무 조건과 인건비 책정 ■ 전문인력 확보와 재교육에 주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간소화 ■ 통일된 문서 양식 개발 ■ 운영 전산화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자원 발굴을 위한 연계기관 확보에 지원

5. 나가는 말

이제까지 선도보호시설의 탈성매매 여성 사회복귀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잠시 미루어 왔다. 때로는 실무자 자신의 능력을 원망하며, 때로는 이 사회의 해이한 도덕성을 개탄하며, 때로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분개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선도보호시설의 "정체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하며, 의심스러워하기도 한다.

"정체성?"

필자가 지난 7년간 선도보호시설의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정체성이란 것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여, 또는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체험해 보았다.

현재 은성원의 입소자 25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이상의 탈성매매

여성들이다. 숫자상으로만 보아서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입소해 있다. 물론 모든 실무자가 정신 없이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흥보활동을 잘해서 또는 연계활동을 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96년 직업보도시설에서 선도보호시설로의 전환 이후 꾸준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주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8년여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 자책도 많이 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지금은 탈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은성원이 잘해서 그런다는 말은 더욱 아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지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 개입인 것이다. 무조건 기다려 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피해 여성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선도보호시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시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도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건 바로 시설의 몫인 것이다.

참고자료2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

○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총괄표(총사인원 33만명, 경제규모 24조원)

구분	업소수	총사여성수	연간거래량(만건)	연간매출액(억)
겸업형	57,983	214,114	10,732	164,966
전업형	2,983	9,092	2,100	18,318
기타성매매	19,224	79,012	4,052	57,879
합계	80,100	329,218	16,884	241,163

□ 성매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 현황

(성매매 관련국민의식조사 2001 오픈소사이어티)

○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즉 윤락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3%에 이르고 있다

항 목	비율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58.7%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41.3%
합 계	100%

○ 현행법에서는 윤락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하께서 알고 계신 현행법의 내용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항 목	비율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되는 것으로 안다	71.2%
상대남성만 처벌되는 것으로 안다	15.8%
윤락여성만 처벌되는 것으로 안다	8.0%
윤락행위를 처벌하는지 몰랐다	3.8%
무응답	1.2%
합 계	100%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1999), [선도보호시설백서]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2),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1), [충남 선도보호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최정은 (2003), [성매매 방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여성부(2002), [선도보호시설백서]
선도보호시설전국협의회 내부자료(2003)

□ 남자들의 성생활에 대한 의식

(한국성과학연구소 2002, 셀러리맨 닷컴, www.vip24.com 조사)

-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본 경험이 있다 78%
- 배우자 외에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갖는 고정된 섹스파트너가 있다 15%
-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 72%
- 인터넷을 통해 사귄 여성과 만나본 경험이 있다 14%
- 남성의 욕구 해소를 위해 공적으로 매매춘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61%
- 매매춘업소를 가 본적이 있다 41.4%
-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찾는 이유는?

항 목	비 율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간다	37%
접대를 위해	34%
직장회식	16%
친구모임	13%
합 계	100%

- 유흥업소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 목	비 율
여종업원	75%
술값	21%
업소 시설	4%
합 계	100%

□ 청소년의 원조교제 및 음란물 피해 실태

(2002. 12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

○ 원조교체를 하는 청소년의 나이

연령	인원(비율)
13세 이하	16(3.9%)
14세	45(10.9%)
15세	90(21.7%)
16세	105(25.4%)
17세	91(22.0%)
18세	59(14.3%)
19세	8(1.8%)
합 계	414(100%)

○ 성매매시 가출 여부

가출여부	인원(비율)
가출	168(54.1%)
비가출	143(45.9%)
합 계	311(100%)

○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성매매 계기	인원(비율)
용돈, 유홍비 마련	186(51.5%)
생계비 마련(잘 곳 마련)	99(27.4%)
호기심에서	24(6.7%)
남성들이 유혹해서	14(3.9%)
기 타	38(10.5%)
합 계	361(100%)

○ 성매매시 인권유린 실태

내 용	인원(비율)
폭력	15(3.4%)
욕설	7(1.6%)
대가 빼앗김	121(27.5%)
대가를 약속만큼 받지 못함	28(6.4%)
협박	22(5.0%)
위협적인 분위기	1(0.2%)
나타나지 않음	246(55.9%)
합 계	440(100%)

○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성관계 실태

(한국청소년 개발원,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조사)

-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 16.2%
- 인터넷을 통해 안사람과 이성교제를 했다 32.4%
- 동성연애를 해 본적이 있다 5.7%
- 채팅을 통해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 30%
- 돈을 받고 성매매에 응했다 16% (초등학생 포함)
-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 66.3%
- 이성을 보면 음란한 장면이 연상된다 37%
- 실제로 성행위를 경험했다 35%

참고자료3

성매매 여성의 피해 사이버 상담사례

〈폭행 사례〉 ○ 제가 몸이 아파서 업주에게 하루만 쉬자고 하였지만 업주가 저를 억지로 손님 방에 잡아끌어 제가 싫다고 하니까 손바닥으로 정의 뺨을 1~2대 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업주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 몸이 뚱뚱하니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살을 빼야 한다며 수면과 휴식을 적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업주는 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싫고 고통스럽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감금 사례〉 ○ 제가 일하는 업소에서는 저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업소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업주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목욕이나 외출시 단체로 나가도록 하면서 어떤 때는 마담이나 주방이모가 따라나와서 감시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임금착취 사례〉 ○ 저는 약 3년간 윤락녀생활을 하였습니다. 업소를 그만둘 때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었는데 제가 받을 돈이 1,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을 그만두니까 업주는 제가 받을 돈이 500만원이라면서 저를 폭행과 협박하여 현금 500만원만 주면서 저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합의서에 날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선불금 사례〉 ○ 저는 윤락가로 오기 전 어느 다방에서 일을 하려고 선불금 300만원을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불금을 받고 다방일은 하지 않았는데 저를 그 다방에 소개 시켜준 직업 소개소에서 그 빚을 갚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지금 일하는 윤락업소에 오게 되었고 지금 일하는 업소의 업주가 다방에서 진 빚 30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 사례〉 ○ 저는 윤락영업이 힘들어 업소에서 도망을 갔는데 업주는 저를 찾아와서 다시 일(윤락)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제가 윤락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주를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1> 미성년자의 성매매피해사례

○ 올해 23세인 A씨는 16세에 부모의 이혼 및 계모의 학대로 인해 가출하였다. 가출한 후 첫 1, 2년 동안은 레스토랑이나 갈비집에서 일을 하며 지냈으나, 방세, 교통비, 저축, 보험 등 생활이 여의치 않자 지역정보지를 통해 술집을 알게 되었다.

○ 본인의 의지를 통해 2차를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나, 매일 술을 마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자 점차적으로 결근이나 지각을하게 되고, 결국 빚만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게 되니 대신 하루 영업비인 30만원을 결근비로 내는 식이었다. 결근비 뿐 아니었다. 동료생일이라고 해서 30만원, 주인생일이라고 50만원을 내야 했으며, 청소비, 전기세, 약값, 낙태비용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는 너무나 많은 반면, 돈은 무조건 주인이 맡아놓고 장부로 쓰게 하니까 빚에 대한 현실감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뿐이었다.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은 수천만원대로 커지고, 미성년자인 나이에 몇 천만원의 빚은 죽음과도 같았다. 돈을 안 갚으면 죽는 줄 알고 꼼짝없이 일에만 매달릴 따름이었다. 도망쳐도 소용없었다. 업주가 고용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데리고 와서는 그동안 찾아다니는 동안 든 경비를 빚에 보태기 때문에 도망치기는커녕 자포자기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 집을 나온 지 8년 되는 때, A씨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겨우 그 곳을 탈출하였고, 현재 쉼터에서 대입검정고시와 미용사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8년의 경험은 여전히 A씨로 하여금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

<사례 2> 윤락여성이 빚으로 포주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24세인 B씨는 2000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윤락 생활을 했다. 계속되는 실직 상황으로 인해 돈이 궁했던 상황에서 친구의 소개로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도와주다 결국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접대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업주는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의 선불금을 강제로 안겼고, 1년만에 B씨의 빚은 2,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B씨에게 막대한 빚이 쌓이게 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술손님들과의 2차는 반강제적이었으며, 윤락을 거부하면 술값 전부를 B씨가 부담해야 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리중이어도 윤락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하였다. 어느 주말에는 1박2일로 손님들과 해수욕장을 다녀오라고 시켜, 갔다 온 직후 다른 손님에 대한 2차를 다시 강요받기도 했다. 심지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결근일수를 계산하여 돈으로 물어내야 했으며, 다리를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을 때에는 업주가 관할지역 경찰을 소개하며 2차접대를 강제로 시켰었다. 만약 술손님이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접대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손님의 시중을 든 B씨의 몫이었다.

○ B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도망을 쳤다. 그러나, 업주는 차용증을 들고 당당하게 경찰에 B씨를 사기죄로 신고, 수배대상자가 되게 하였으며, 부모님집에서 숨어지내던 B씨는 경찰의 요구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중이던 B씨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폭력배에 의해 업소로 끌려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찾아다닌 비용 몇백만원의 빚이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업주는 B씨에게 한번만 더 도망치게 되면 사창가나 이발소, 섬 등으로 팔아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며, B씨는 자신이 그렇게 팔릴 경우 최소 2,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량의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 도망칠 엄두를 내지도 못한 채 다시 윤락생활을 해야만 했다.

○ 그러다, 고민 끝에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500만원을 마련하여 업주에게 주었으나, 부족한 돈 600만원을 더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며,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하거나, B씨의 가족들에게 폭력배를 보내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 1년의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B씨는 결국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